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2호로 2022년 11월 10일 우경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11.11.~11.16./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상공인을 위해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홍보계획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5조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지역상품 및 업체, 관내 전문건설업체,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정부는 일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물품·용역·공사를 공공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기업(중소기업) 등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주요내용

기업형태	우선구매비율 등 규정	법령
중소기업	구매총액의 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구매총액의 물품용역5%, 공사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	구매총액의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창업기업	구매총액의 8%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협동 조합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에 대한 구매액 비율을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심화되는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한 것이며,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